

받는 사람(이름 및 주소):	집행관(이름 및 주소): <b>San Diego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b> <b>PO Box 85306</b> <b>San Diego, CA 92186-5306</b>  전화: (619) 544-6401 팩스: (619) 236-2007
이메일:	
법원, 사법 관할 구역 또는 지부 법원 이름(있는 경우): <b>San Diego 카운티 고등 법원</b> <b>330 W Broadway, Rm. 225</b> <b>San Diego, CA 92101</b>	<b>California 중계 서비스 번호</b> <b>(800) 735-2929 TDD 또는 711</b>
원고:	법원 사건 번호:
피고:	
<b>퇴거 통지</b>	집행관 파일 번호:

위 법원에서 발부한 점유권/부동산 집행 영장(퇴거)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영장에 기재된 부지를 비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b>퇴거 대상 주소:</b>	
<b>이에 따라 소유물의 점유권이 임대인에게 이전되어야 함을 최종적으로 통지합니다:</b>	

귀하가 할당된 시간 내에 부지를 비우지 않을 경우, 즉시 영장을 집행하여 귀하를 부지에서 퇴거시킬 것입니다. 당시 부지 내에 있던 모든 개인 소유물은 임대인에게 인도되며, 임대인은 퇴거일로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임대인이 해당 소유물을 보관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귀하가 지불하면 해당 개인 소유물을 귀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소유물이 임대인의 부지에 보관되는 경우, 합리적인 보관 비용은 보관 기간 동안 필요한 공간의 공정 임대료입니다. 귀하가 합당한 보관 비용을 지불하고 15일 이내에 점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공개 매각을 통해 귀하의 소유물을 매각하고 매각 수익금에서 보관 비용과 매각 비용을 충당하거나(1988 CIV), 소유물의 가치가 \$700.00 미만인 경우 임대인은 소유물을 처분하거나 자신의 사용을 위해 보유할 수 있습니다. (715.010(b)(3), 1174 CCP)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부지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송 제기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영장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첨부된 점유권 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본 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거가 압류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영장에 명시된 대로 점유권 청구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점유권 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Kelly A. Martinez**  
보안관

서명: \_\_\_\_\_  
보안관 공인 대리인

원본